

# 입찰자유의서

이 유의서는 한국도심공항주식회사(이하 “한국도심공항”이라 한다)가 행하는 한국도심공항 인천공항물류2센터 구조안전 특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 1 장 입찰자 유의사항

### 제1조 (용역범위 및 계약기간)

1. 용역범위는 과업수행지침서, 과업수행계획서(입찰자), 설명회 결과 등 기타 관련 서류에 의한다.
2.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내로 한다.  
단, “한국도심공항”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 될 경우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2조 (입찰등록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2020. 7. 6(월) 17:00까지 한국도심공항 609호 경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 참가신청서(당 “한국도심공항” 소정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각 1부
3.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사본, 사용인감 지참) 1부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가 시 신분증 지참) 1부
5.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 등록증(사본) 각 1부
6. 건설 기술인 보유증명서(사본) 1부
7. 수행실적 증빙 서류(실적증명서 원본, 해당 계약서 사본, 최근3개월 이내 발급) 1부  
\* 책임기술자의 수행실적 중 PC구조 구조설계 및 안전진단 수행실적 관련 서류 포함
8. 주거래은행금융거래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1년내 부도 발생 없음 확인용) 1부
9. 입찰이행보증증권(제안가격 총액의 10%) \*한국도심공항(주) 사업자번호 367-81-00654

### 제3조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시 입찰금액의 10/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납부한다.

1. “한국도심공항”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
2. 해당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 제4조 (입찰보증금의 처리)

1.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2.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 “한국 도심공항”에 귀속시킨다.

#### 제5조 (가격제안서의 작성)

가격제안서는 과업수행지침서 및 현장점검으로 작성한 과업수행계획서에 기준하여, 구분별로 금액을 기재하고 합계금액(부가세 포함)을 표시한다.

#### 제6조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1.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로부터 입찰등록을 받아 입찰등록업체가 3개 초과일 경우 제안발표는 등록업체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점수 3개 업체만 추후 유선으로 개별 통보한다.
2. 평가 방법은 총점 100점으로 기술평가(제안서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3.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득한 1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4. 기술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평가점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으로 한다.
5. 협상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선순위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한다.
6. 입찰 참여사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7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중복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 또는 관계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자의 입찰.
7. 소정의 등록절차를 필하지 아니한 자가 제출한 입찰.

#### 제8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납품 등을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물품의 품질, 수량을 부정 납품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거나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
4.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5. 당 "한국도심공항"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자.
6.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
8.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9.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10.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 제9조 (입찰사항의 변경 등)

"한국도심공항"은 필요한 경우 입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에는 변경사항을 입찰 전에 입찰 참가자에게 통지한다.

### 제 2 장 계약 일반사항

#### 제10조 (계약의 체결)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단, "한국도심공항"의 부득이한 형편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 (계약이행보증금)

1.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도심공항"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한국도심공항"에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제3조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내용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 (내역서 제출)

1. 낙찰자는 낙찰 후 5 영업일 이내에 계약금액에 관한 산출근거를 명시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내역서는 수량 및 단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명시한 총괄내역서를 제출하며 세부적인 산출내역서 작성지침은 추후 "한국도심공항"의 지시에 따른다.
3. 낙찰자는 내역서 산정 시 "한국도심공항"이 별도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의거하여야

한다.

4. “한국도심공항”은 계약 체결 시에 제출된 내역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 (금액의 고정 및 변경)

계약단가는 계약기간 중 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4조 (대금 지급)

1. 계약자는 용역을 완료한 후 당 “한국도심공항”의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한국도심공항의 사정에 의해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2. “한국도심공항”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일자부터 1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3. 계약자는 과업 성과품 일체를 제출하고 필요시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등록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한다

#### 제15조 (기타사항)

계약자의 계약해지, 배상책임 등은 첨부된 계약서를 준용한다.

#### 제16조 (용역의 검수)

낙찰자는 용역수행 중 “한국도심공항”이 부실용역이라 판단하여 재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재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추가비용을 요청할 수 없다.

### 제 3 장 기타사항

#### 제17조 (하도급 금지)

계약자는 원칙적으로 계약된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한국도심공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8조 (관계서류의 숙지)

입찰자는 “한국도심공항”이 정한 현장설명서, 입찰자유의서, 과업수행지침서, 관련 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이해하고 납득 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과 관련된 문서 등의 해석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한국도심공항”的 해석에 따른다.

#### 제19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과업수행지침서, 과업수행계획서, 평가회 결과, 입찰자 유의서, 기타 계약에 관한 문서 등으로 구성 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 제20조 (준용규정)

본 유의서에 규정되지 않은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도심공항”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준용하고 관련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의한다.

#### 제21조 (입찰조건의 변경)

관련서류상의 규격 또는 물량 등이 표기되지 않은 상항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문의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낙찰자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은 본 “한국도심공항”이 지정 또는 요청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이에 야기되는 추가비용 및 추가용역 등에 대하여는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제22조 (복제 또는 타인에의 대여)

본 입찰과 관련된 제반서류는 “한국도심공항”의 승인 없이 복제 또는 타인에게 대여 할 수 없다.

#### 제23조 (청렴계약의 이행)

1.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접대나 금품 등 일체의 부적절한 공여를 직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 풍토 조성 및 공정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
2. 계약 양 당사자가 이를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지는 물론 향후 입찰참가 제한 등 거래 단절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4조 (조문의 제목 해석)

본 유의서의 각 조문의 제목은 독립하여 효력이 없다.